

2023년도 제25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12.(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하병현(분과위원장 대행), 심동섭,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4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00건(안건번호 제2023-190440호~19283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90440호는 블로그에 음악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감상평,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으며, 링크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90441호는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90442호~190444호는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74869호~174899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90445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90446호~190451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90452호~19283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66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52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4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245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반하람 주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호 안건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2쪽 내지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 ★★★'외에도 같은 앨범의 수록곡인 'ㄱ ㄱㄱㄱㄱ
ㄱ ㄱㄱㄱㄱㄱ'와 '☆☆☆ ☆☆'의 전체분량을 같이 게시하고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 ◆◆] 카테고리 내의 게시물이 총 몇 개인가.
- 반하람 주임: 40여개 정도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스트리밍 영상이 ◆◆◆의 임베디드 링크인 것으로 보임.
- 반하람 주임: 해당 영상 하단에 출처를 ◆◆◆로 게시하고 있기는 하나 영상 자체는 ●●●●●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C 위원: 해당 영상의 링크를 새 창으로 띄워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영상의 링크를 새 창으로 재생함)
- A위원: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른 판례가 있는가.
- C 위원: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 관리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는 있음. 다만, ◆◆◆의 경우 저작권자가 임베디드 링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도 ◆◆◆와 비슷한 방식으로 저작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지가 의문임.

- C 위원: ○○○○○를 접속해보니 ■■■■와 같은 방송사들이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으로 보이는데, 개인 유저도 자유롭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C 위원: 만약 저작권자가 ○○○○○에 업로드한 오피셜 뮤직비디오를,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공유하기를 통해 게시한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 반하람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가 영상 하단에 출처를 ◆◆◆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 ◆◆◆에 게시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 플레이어를 이용해 게시물에 게시한 것으로 추정됨.
- B 위원: 게시자에게 경고의 시정권고를 통해 ◆◆◆의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반하람 주임: 참고로 제2023-250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같은 블로그 내의 동일한 [◆◆ ◆◆] 게시글을 대상으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일종의 방조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임.

- C 위원: 법원의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경우 이미 명확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만 시정권고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현재 추정되는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불법복제물로 보고 가결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
- B 위원: 다른 분과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할 것 같음.
- C 위원: 아까 A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판결한 링크의 불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본이 불법이어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원본이 불법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부결 의견임.
- A,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1건임. (순번 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의 불법 번역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 내지 5번은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건으로, ♥♥♥ 블로그에 콘솔 게임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 ♠♠♠♠ 주소를 게시한 사안이며, 총 3건임.

(순번 5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링크를 클릭하면 게임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할 수 있음.

순번 3번 내지 5번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

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3번 내지 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3번 내지 5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은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1건임.
(순번 6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네이버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 ▲▲'를 직접 번역하여 자막(.smi 파일)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2023. 09. 09.부터 국내 채널 '▼▼▼▼(▼▼▼▼)'에서 방영 중이며 ■■■■ ■■■■ ■■■■을 통해 개별 VOD 또한 구매 가능함.

순번 7번 내지 12번의 6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7번 내지 1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7번 내지 1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3번 내지 2,40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3,667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최악의 악'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3번은 웹

하드에서 드라마 '최악의 악'의 1화 내지 3화의 전체분량을 31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9. 27.부터 디즈니+에서 독점 공개 중인 드라마임.

(영화 '더 넌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30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더 넌2'의 1시간 49분 전체분량을 3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9. 27.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143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2시간 2분 전체분량을 3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8. 9.에 극장 개봉하여, 현재 시리즈온, 웨이브 등에서 VOD 판매 중인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3번 내지 2,40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3번 내지 2,400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순번 13번 내지 2,400번 중 이

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90440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90441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90442호~190444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90445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90446호~190451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90452호~19283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5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5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0. 26.

분과위원장 대행 하병현

위원 심동섭

위원 최진원